

의안번호	제 2021 - 17호
보 고 연 월 일	2021. 8. 17. (제111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양형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2
1. 양형위원회 개임	2
2. 신임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3
III.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4
1. 개요	4
2. 신규 위촉 대상자	4
3. 위촉장 수여식 개최	4
4. 전문위원 구성	5
IV. 제8기 양형위원회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분석	6
1. 개요	6
2. 양형자료조사 내용	6
3. 분석 내용	7
V. 2021년도 하반기 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	9
1. 목표	9
2. 교육기간 및 장소	9

3. 교육 과정	9
4. 교육 대상자(지원자) 및 강사	9
5. 교육 내용	9
VI. 양형연구회 6차 심포지엄 결과 보고	11
1. 성과	11
2. 행사 개요	11
3. 참석범위	11
4. 심포지엄 주요내용	12
5. 심포지엄 세부일정	21
VII.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22
1. 개요	22
2. 홍보 이벤트 시행	22
VIII.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23
1.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현석 판사	23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30
가. 개요	30
나. 회신 완료 접수의견	30
다.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	37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39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39
나. 민원 우편	44
 [별지1]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50
[별지2]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52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전문위원 제141차 전체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화상회의로 개최함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41차	2021. 7. 19. 16:00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II. 양형위원 개입,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양형위원회 개입

가. 개요

- 2021. 6. 10.자로 조상철 위원 퇴직(해임간주), 2021. 6. 11.자로 고경순 위원 해촉(사임)
- 2021. 7. 5.자로 김관정 위원(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이근수 위원(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 각 위촉

나. 양형위원 구성

지위	성명	직위	위촉일자 (임명일자)
위원장	김영란	前) 대법관, 국민권익위원장	2021. 4. 27.
위원 (법관)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2021. 4. 27.
	구희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 4. 27.
	권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2021. 4. 27.
	손철우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21. 4. 27.
위원 (검사)	김관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2021. 7. 5.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	2021. 7. 5.
위원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2021. 4. 27.
	한영환	변호사	2021. 4. 27.
위원 (교수)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4. 27.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4. 27.
위원 (학식·경험)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	2021. 4. 27.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2021. 4. 27.

2. 신입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21. 8. 17.(화) 15:30
- 장 소 : 대법원 11층 대접건실
- 참석 범위 : 대법원장, 위원장, 상임위원, 비서실장
- 위촉대상자 : 김관정, 이근수 위원

※ 신입 양형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1] 신입 양형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III.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개요

- 2021. 4. 26.자로 강수진 전문위원 해촉(사임)
- 2021. 6. 30.자로 최성국 전문위원 해촉(사임)
- 2021. 8. 19.자로 범현 전문위원 해촉(임기 만료)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2. 신규 위촉 대상자

- 최재아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21. 7. 5.자)
- 최익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2021. 8. 17.자)

3.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21. 8. 17.(화) 15:55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최재아, 홍진영, 박복순, 최익구 전문위원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2]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4. 전문위원 구성

[2021. 8. 20. 기준]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최초위촉일
법원	최승원	부산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19. 2. 27.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21. 2. 22.
	백광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20. 3. 2.
검찰	최재아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검사	2021. 7. 5.
	유관모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검사	2020. 2. 17.
변호사/ 군법무관	김희연	김희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7. 3. 7.
	최익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2021. 8. 17.
	이형일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군법무관	2020. 3. 23.
교수/ 전문가	한상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5. 16.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15. 5. 16.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 8. 20.
	박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과확산팀장	2019. 9. 9.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7. 5.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 7. 5.

IV. 제8기 양형위원회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분석

1. 개요

- 양형위원회 제110차 전체회의(2021. 6. 7.)에서 제8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와 일정이 결정됨
 - 전반기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방안과 대상에 대한 원칙 결정,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 후반기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작업 완료,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관세법위반범죄 각 양형기준 설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 제8기 양형위원회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인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양형기준 수정안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자료를 제공
 - 범죄유형의 세분화, 범죄유형별 기준형량,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 추출, 양형인자별 가중치 등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통계자료 추출
- 2021. 6. 23.부터 2021. 7. 9.까지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함

2. 양형자료조사 내용

가. 조사 대상범죄

- 제8기 양형위원회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인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전국 법원에서 2011. 1. 1.부터 2020. 12. 31.까지 선고된 사건
- 조사 대상 건수 : 1,739건(세부 죄명별로 단일범 및 동종경합범¹⁾추출, 총 1,910건 중 조사 분석 제외 사유가 있는 일부 사건 제외)

1) 동일 죄명의 동일 범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조사기간

- 2021. 6. 23.(수) ~ 7. 9.(금)

다. 조사방법

- 양형자료분석관 중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분석관을 제외한 본부 소속 분석관 8인과 자료조사과장, 행정관을 포함한 전체 10명으로 조사를 시행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인 확산과 방역수칙상 제한으로, 이전 양형자료조사와 달리 검찰청 출장조사 형식이 아닌 판결문만을 대상으로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양형정보시스템에 입력

라. 조사 완료

- 예정된 조사기간 동안 전체 조사대상 1,910건 중 이중경합범 등의 비해당 사유로 171건을 제외한 1,739건의 양형자료조사를 완료함
- 또한 양형자료조사가 완료된 1,739건 중 통계분석 이전 데이터 확인/점검 과정에서 병합사건, 비해당 법조 등의 사유로 26건을 제외한 전체 1,713건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함
- 법원 및 죄명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은 [별지3, 4]참조

3. 분석 내용

-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형법 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현재 양형기준 방식²⁾으로 분류하여 통계분석 결과를 설명
 - 각 장에는 사건수, 선고내역 등을 포함한 전체 현황을 나타낸 다음,
 - ① 전체 범죄군의 조사 인자에 대한 빈도표를 보였고, ② 분산분석 및 T-test의 방식을 이용하여 양형인자에 따른 징역형의 형량 차이

2) 유기·학대의 일반적 기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로 분류하여 분석함

를 분석하고, ③ 카이제곱 검정 방식을 이용하여 양형인자에 따른
실형·집행유예 여부를 분석함

V. 2021년도 하반기 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

1. 목표

- 신규분석관에 대한 사례 위주 실무교육을 통해 즉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관 전체 집합교육을 지양함
- 2021년 상반기 지방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을 2021. 4. 15.(목) ~ 16.(금) (1박 2일) 실시하였으므로 지방분석관에 대한 교육은 미실시
- 신규 분석관(3명)에 대한 교육 실시

2. 교육기간 및 장소

가. 교육기간

- 2021. 7. 8.(목) 09:00~18:00

나. 장소

- 사법연수원 214호(자료조사과 사무실)

3. 교육 과정

- 양형자료조사 및 운영점검 업무 교육

4. 교육 대상자(지원자) 및 강사

- 교육 대상자(3명): 본부 근무 신규분석관(2명), 의정부지법 근무 신규분석관(1명)
- 교육 강사 : 자료조사과장 외 2명

5. 교육 내용

- 양형위원회와 양형자료분석관

- 양형위원회 조직 및 기능
- 양형자료분석관의 위상과 주요업무
- 양형기준 운영점검
 - 양형기준운영점검시스템 안내 및 사용방법 실습
 - 부교재(양형기준운영점검 사례집)를 활용하여 실제 사례 위주 실습 교육 실시

VI. 양형연구회 6차 심포지엄 결과보고

1. 개요

- 아동학대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청에 부응하여,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양형 측면 의견을 수렴
- 심포지엄 내용과 결과는 양형위원회가 2021년 진행하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될 예정임

2. 행사 개요

- 주 제: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 주 최: 양형위원회
- 일 시: 2021. 6. 21.(월) 14:00 ~ 18:00
- 장 소: 대법원 1층 대강당
- 방 청: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중계 방식

3. 참석범위

- 개회사(인사말, 2명):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양형연구회 회장
- 사회자(2명):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손철우 상임위원
- 발표자(2명):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 지정토론자(5명) :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연 큰길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박현주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허용 법무법인인 변호사, 이세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온라인 방청

- 내부: 양형위원, 전문위원, 양형연구회 회원 및 연구회 참여 단체
관계자
- 외부: 방청신청인 및 기자단

4. 심포지엄 주요내용

(1) 1세션 「산업재해와 양형」 - 주제발표 및 토론

(가)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이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

○ 아동학대범죄 실태

- 아래 표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늘
어가고 있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 확산에 따른 판정 건
수 대비 사건처리비율도 상승하는 추세임

<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판정·사건처리 결과('15년~'19년)

단위: 건, % / 출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아동학대 주요통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아동학대 신고건수	19,203	29,671	34,166	36,416	41,389
아동학대 판정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3,564	6,018	7,297	7,988	10,998
판정건수 대비 사건처리비율	30.4%	32.2%	32.6%	32.5%	36.6%

- 다만,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사건 수는 늘지 않고
있고, 사건 처리 건수 대비 형사처벌 비율은 오히려 하락 추세
임

<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판정·사건처리·형사처벌 결과('15년~'19년)

단위: 건, % / 출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아동학대 주요통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아동학대 판정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3,564	6,018	7,297	7,988	10,998
형사처벌 건수	174	500	569	266	361
사건처리 건수 대비 형사처벌 비율	4.9%	3.3%	7.8%	3.3%	3.3%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 의견

-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양형인자에 반영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를 두고,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함
-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는 2021. 1.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전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② 아동학대범죄 중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가중인자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아동학대범죄 전반에 확대 적용, ③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를 가중요소로 반영, ④ ‘처벌불원’ 사유가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 ⑤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 사유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려할 것 등임

(나)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아동학대범죄

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발표에 대한 토론

- 일회적인 형사처벌만으로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성행교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신속한 개입과 분리, 치료가 가장 필요한 일임
- 보건복지부의 양형기준 수정 제안에 대한 의견은 ① 처벌불원의 적용 배제는 양형기준 전반에서 다루어야 하고, ② 대부분의 아동학대범죄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보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할 경우, 대부분 아동학대범죄가 가중인자 적용을 받게 되므로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를 가중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③유기·학대 범죄의 체계를 생각할 때 현재의 양형기준 형태를 유지하되,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여 규정함이 타당

(다) 이수연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가 「아동학대 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발표에 대한 토론

- 그동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의 이유로는 ① 처벌불원, ②돌보아야 하는 다른 아동이 있음, ③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④그동안 아동을 양육해 왔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음.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되면 안 됨. ① 처벌불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다른 유족(아동 사망 사건)에게도 학대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음. ② 돌보아야 하는 다른 아동이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다른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남아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분리해야 할 것임. 또한 ③ 훈육 과정이라는 사유는, 더 이상 처벌을 훈육으로 인식해서는 안 됨.
④ 피해 아동을 그동안 양육했다는 점은, 양육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임

- 아동학대사건에서 가해자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보호임. 아동학대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조사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상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법원의 처분에 반영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보호와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
- 범죄예방으로 접근하면 대다수 아동학대는 경제적 빈곤, 정신적 문제, 학대의 대물림 등으로 발생하므로, 아동보호는 보호시설, 관계기관의 업무 등으로 연결되고 결국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거시적이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함. 이제는 가해자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임.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관에 대한 인력증원, 아동보호시설 확충과 지원이 가장 시급함

(2) 2세션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 주제발표 및 토론

(가)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

- 현행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 중 아동학대 범죄 부분 양형인자 관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인자의 인정 요건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의 정의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강화 필요 있음

현행 양형기준상 정의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누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u>진심으로 누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u>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

<p>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p>	<p>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p>
---	--

- 다음 이유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을 제외한 다른 특별양형인자는 수정할 필요가 적음. ① 모든 유형에서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 경우가 더 많았고, 그로 인하여 영역분포에서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아동학대치사' 유형에서는 가중영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② 특별감경인자 중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는 적용된 사례가 없거나 매우 낮은 빈도로 적용되었고, 집행유예 결정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데, 양형인자의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③ 특별가중인자 중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빈번하게 적용되었음

○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양형기준 관련

-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포섭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체계상 더 적합함
- 살인범죄 양형기준 반영 방법은 ① '아동학대살해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방안, ② '중대범죄 결합 살인' 유형에

포섭하는 방안, ③ ‘아동학대살인’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거친 후 논의·결정함이 바람직함

-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포섭하여 유형을 분류하더라도,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적용함이 타당함

○ 성범죄, 공갈범죄 등에서 아동학대 관련 요소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 성범죄, 공갈범죄,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에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범죄를, 명예훼손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에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범죄를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로 규정하여야 함.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 있음

(나) 박현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

- 아동학대치사죄의 권고 영역은 기본 4년~7년인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기본 영역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아동학대치상죄 역시 기본영역의 하한이 적어도 법정형 하한과는 일

치하여야 함

- 미취학아동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 피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범죄 발견이 어려운 점,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과 중대 아동학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취학 전인 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현행 양형기준의 일반가중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삼아야 함

(다) 허용 변호사(법무법인 인)가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

- 현재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의 죄,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의 죄, 아동학대중상해(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의 죄 이외의 나머지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나열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개별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①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 ②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행'을 일반가중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변경, ③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자'라는 인적 관계를 특별가중요소로 규정, ④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및 제7조의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 추가 및 특별가중인자 설정, ⑤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치사죄나 아동학대중상해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권고 형량범위 상향, ⑥ 감경요소에서 '참작할 만한 범행 동

기'를 삭제하거나 또는 내용 변경('훈육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적용되지 않도록 내용 변경) 등 제안

(라) 이세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에 아동 최선의 이익은 반영되고 있는가?」 -

- 피해 아동의 가족이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한 복합적인 양상, 폭력의 은폐성, 강화성, 중복성, 순환성 등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범죄의 양형은 '숨방망이'로 비유되고 있으나, 다른 범죄와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철방망이'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동학대 재발방지와 부모 자녀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은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법원에 제출된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피해아동과 피고인의 관계나 학대 정황과 이 사건의 발전 등 사건 전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함. 또한, 사건화가 되지 않았던 경우까지 포함하려면 결국 관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담당자로부터 과거 신고·접수되거나 사례관리 해왔던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를 제안함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① 유기·학대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에서도 '보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등의 신설,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

혹한 범행수법'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추가 설정, ③ 초범 관련 인자 적용 시 형사처벌 전력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관련 기록까지 고려할 것 등 제안

5. 심포지엄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출석(오프라인) 또는 접속(온라인) 확인	
14:00~14:10	식 전 행사	개회식 사회 : 양형연구회 기획간사
		인사말씀(각 3분) 1. 양형위원회 위원장 2. 양형연구회 회장
		장내 정리(2분)
14:10~15:30 [80분]	◆ 제1세션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사회 :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14:10~14:50 [40분]	주 제 발 표	•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14:50~15:05 [15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1: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5~15:20 [15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2: 이수연 (큰길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15:20~15:30	플로어토론	
15:30~15:50	중간 휴식	
15:50~17:50 [120분]	◆ 제2세션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사회 :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5:50~16:35 [45분]	주 제 발 표	• 김세중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16:35~16:55 [20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1: 박현주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여성·아동 범죄조사부 부장검사)
16:55~17:15 [20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2: 허용 (법무법인 인 변호사)
17:15~17:35 [20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3: 이세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7:35~17:50	종 합 토 론	
18:00	◆ 폐회	

Ⅶ.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이벤트

1. 개요

- 보다 많은 국민들이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하여 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체험 결과로 나타난 국민들의 법감정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 체험자 수를 늘리고자 함

2. 홍보 이벤트 시행

- 2021. 5. 31.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게시
- 기간 : 2021. 5. 31.(월) ~ 2021. 6. 30.(수)
- 기념품 : ① QCYT2C V5.0 무선충전 블루투스이어폰 68개
② 샤오미 스마트 미밴드4 5개
- 당첨자 발표 : 2021. 7. 16. 15:00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함
- 별도의 추첨 절차 없이 응모한 73명에게 기념품 배송

VI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현석 판사

가.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관 오현석 판사가 2021. 6. 30.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커뮤니티에 아래 글을 등록하고, 2021. 7. 2. 양형위원회에 제출함

나. 제출된 글 내용

<조직적 사기 '단순 가담'이라는 감경요소의 문제, 양형 편차의 문제>

보이스피싱 조직적 사기 양형이 많이 구구한 것 같습니다. 양형 편차 문제입니다. 전부터 느끼던 차에, 이번에 어느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급이 아니고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한 공범들이 워낙 많다보니 그 중에서 2020양형 기준 131쪽 02.조직적 사기, 제2유형 1~5억 원에 속하여 구간이 같은 피고인들을 모아서 비교할 수 있었고 역시 재확인되었습니다. 총액, 횟수, 기간 등이 다르긴 합니다만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공범인 상담원들 사이에 3배 정도까지 선고형 차이가 나고, 피해회복 여부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 가담 인정 여부와 그 선고형의 뚜렷한 차이가 상관성이 있습니다. 1심, 2심 판결을 읽어보면 단순 가담 인정하는 사안과 그러지 않는 사안 사이에 사실관계 차이는 뚜렷하게 안 보이는데, 선고형에서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단순 가담 인정 이유를 써 주신 판결이 드물기는 하지만 발견하면 반가운데,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조직에서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을 근거로 한 판결이 보입니다. 특별양형인자로서 특별히 감경할 사유가 맞는지 아닌지 고민입니다. 양형위원회는 "단순 가담"을 단순히 단순 가담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라

고 정의하였습니다.

나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토론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형기준을 떠나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비슷한 콜센터(오더집,장집) 상담원들끼리 선고형 차이가 너무 크다는 편차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 양형 세미나를 하기 어려운 형편인 만큼 온라인으로나마 넓게 의견교환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단순 가담이라는 큰 감경인자(특별양형인자여서 큼니다)를 인정하여 감경하는 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고, 반드시 꼭 할 경우에만 인정하되 널리 다수 견수에서 자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는 말로써 기망하는 실행행위를 직접 한 사람들이며, 여러 차례 했고 피해자 여럿이라 다양하며 가담기간은 며칠, 몇 주는 못 봤고 대개 수 개월인데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일 리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콜센터 설치 국가가 옮겨진 뒤에 계속 가담했는데도, 범죄단체가입죄,활동죄 유죄인데도, 인정례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밝힌 용어 정의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매우'는 없애도 괜찮은 것인지, '매우'라는 단어를 없애는 것처럼 하여 사실상 무시하는 판결례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여러 물음표가 잇따라 생깁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것이 맞는지, 벗어났다면 그 이유기재는 어떠한지 하는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2항 본문을 지켰는지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여서 현행 법률의 문제입니다.

차. 단순 가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0양형기준 135쪽

피해회복, 처벌불원 등 여러 양형인자들이 있지만, 단순 가담 인정 여부와 그 선고형의 뚜렷한 차이가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단순가담, 이것은 영향력이 매우 큰, 아주 큰 양형요소입니다. 그것 하나로써 발휘되는 효과를 3가지 경우로 나눠 봅니다. 신앙형기준시스템에서 특별양형인자만 on/off 해가면서 살펴봅니다.

첫째, 가중 ↔ 기본 사이를 오가게 만듭니다.

가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영역 2y8m~7y 인데,

단순 가담 하나 인정하면 기본영역 1y4m~5y 입니다.

하한에 몰리는 선고형이 많은 현실에서, 2배 정도의 징역형 차이로 귀결됩니다.

둘째, 가중에서 감경으로까지 점프시키는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입니다.

불특정~ 가중사유는 같고,

자수나 완전한 자발적 전모 개시라는 행위자요소인 감경요소가 하나 있어도 일단 여전히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7년인데

단순가담 하나 인정하면 감경영역 1년~3년.

하한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하한에 몰리는 선고형이 많은 현실에서, 엄청난 차이 맞습니다.

셋째, 기본을 감경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 회복은 행위자요소지만 불특정~ 행위요소를 상쇄하므로

이 경우 기본영역 1y4m~5y 인데

단순 가담을 인정하면 감경영역 1y~3y 입니다.

금도끼 납춘회 조직 등 몇 건만 아래에 나열하되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어서
봅니다만, 같은 상담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해회복, 처벌불원 등
양형요소로 이러한 큰 편차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전체적
으로 사건 건수가 정말 많습니다. 국제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처음 출현한
2006년부터 벌써 15년이 흘렀는데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연도별 보
이스피싱 범죄 적발 건수가 근래에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범죄통계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양형위원회는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실무의 70% 내지 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였다. 양형기
준 권고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사기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이유들이 여럿인데, 특히 우리나라 사기죄의 범죄발생이 가파른 증가세여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를 손꼽을 수 있다. 전국의 범죄통계원표를 집계한 결과를
수록한, '2020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0년과 대비하여 2019년의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52.3% 증가했고(205,913건 → 313,593건), 발생비는 48.4%
증가하였다(407.6 → 604.8). 사기죄 양형기준이 2011. 7. 1. 시행된 이래
로 지금까지 수정된 적이 없는 형편인데, 사기 범죄발생의 경우에는 이처럼
상당히 많이 늘어났으며, 증가 추세가 10년간 대체로 지속되어 왔다. - 서
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1노292 판결 중에서.

A 그룹-----

특별양형인자 적시하되 단순가담 불인정 사례, 또는 기준 쓰든 안쓰든 선
고형이 권고범위에 있거나 이탈폭이 작은 선고 사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
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김재우 3년6개월 (항소심 2년4개월).

황이남 3년 (항소심 1년10개월).

유병창 3년

최한빈 3년 (항소심 2년6개월).

김태진 3년 (항소심 2년8개월).

이운재 2년6개월.

박승현 2년6개월(팀장 아닌 작년 사건).

정세교 2년6개월(재작년 사건).

B 그룹-----

특별양형인자 적시하되 단순가담 인정한 이상현, 정명윤, 이라경 사례, 또
는 양형기준 적시 있든 없든 2년보다 가벼운 선고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월~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이상현 2년.

박승운 1년8개월.

이라경 1년6개월.

백두산 1년6개월.

정명운 1년6개월.

홍대운 1년2개월(중국만 기소).

// 이렇게 피고인 이름을 적어놓는 것에 불편하거나 우려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양해 바랍니다.

더욱 폭넓은 심층 비교분석이 향후 계속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문제의식을 갖는 분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고견을 청합니다.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셨는지 부디 말씀해주실 분을 고대해 봅니다.

양형위원회에 건의 드립니다. 단순가담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135쪽처럼 '매우 단순한'이 맞다면 '매우 단순한 가담'이라고 131쪽의 감경사유 이름을 아예 명확히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135쪽 단순 가담의 정의를 좀더 분명히 자세히 함으로써 보완할 필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석 올림

02 '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사기범죄

2011.
7. 1.
시행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단순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1. 7. 19.까지 총 43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1.02.26.(1)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게시글을 공개로 변경하여 달라는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건의
2	2021.04.03.(1)	○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련 질의
3	2021.05.10. ~2021.06.27.(28)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강력한 처벌 요청
4	2021.05.12.(1)	○ 형사범죄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한 경우 감경 요소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요청
5	2021.05.14.(1)	○ 사기범죄·성범죄·폭력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6	2021.05.15. ~2021.06.27.(3)	○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7	2021.05.25.(1)	○ 형사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8	2021.05.28. ~2021.06.04.(2)	○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민원
9	2021.05.30.(1)	○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10	2021.05.31.(1)	○ 형사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 설정 요청
11	2021.06.08.(1)	○ 양형에 관한 국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나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
12	2021.06.13.(1)	○ 개별사건 재판 결과에 대한 부당함 호소
13	2021.06.22.(1)	○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질의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양형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전달 통로입니다.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로 접수된 의견 및 그에 대한 회신은 매회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의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중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란을 통하여 공개되므로, 이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전문위원단의 토의 내용을 ‘전문위원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받은 후, 이를 기초로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여 각 쟁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문위원단 회의에서는 “책임조각사유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양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양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책임조각사유에는 이르지 않았으나”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만 표현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반복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 9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0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

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확정된 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고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하도록 하는 형법 제305조 제2항 개정은 아직 성범죄 양형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1. 4. 27. 출범한 제8기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법률 변경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검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전까지 이러한 법률 변경에 대하여 성범죄 양형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개별 재판부의 양형기준 해석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1. 7. 19.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8건)

- ▶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1.06.27. ~2021.07.19.(6)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2	2021.06.30.(1)	○ 심포지엄 자료집 송부 요청
3	2021.07.02.(1)	○ 취지불명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1. 7. 19.까지 총 11건)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1.05.01.(1)	○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질의
2	2021.05.12.(1)	○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처벌 시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
3	2021.05.20.(1)	○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4	2021.05.21.(1)	○ 성범죄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 폐지 요청
5	2021.05.20.(1)	○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6	2021.06.10.(1)	○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질의
7	2021.06.10.~ 2021.07.19.(2)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8	2021.06.11.(1)	○ 제도개선 및 형량 강화 요청
9	2021.06.22.(1)	○ 음주운전 관련 범죄 및 장애인·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10	2021.06.23.(1)	○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5. 1. 접수번호:2AA-2105-0001261)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인자를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해석은 이를 적용하는 개별 재판부에 맡겨져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양형관련으로 양형위원회에 이첩(2021. 5. 12. 접수번호:2AA-2105-0456748)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5. 20. 접수번호:2AA-2105-0726107)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5. 21. 접수번호:2AA-2105-0795092)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5. 20. 접수번호:2AA-2105-0763213)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6. 10. 접수번호:2AA-2106-0367400)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소극가담’ 및 ‘만취상태’ 양형인자를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극가담’ 및 ‘만취상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해석은 이를 적용하는 개별 재판부에 맡겨져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6. 10. 접수번호:2AA-2106-0400906, 2021. 6. 11. 접수번호:2AA-2106-0428925)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6. 11. 접수번호:2AA-2106-0432060)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9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6. 22. 접수번호:2AA-2106-0876385)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0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6. 23. 접수번호:2AA-2106-0891742)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1. 07. 19.까지 총 1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1.07.12.(1)	○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질의 (접수번호:2AA-2106-0367400) 회신에 대한 소극행정신고

나. 민원 우편

○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1. 07. 16.까지 총 7건)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1.05.21.(1)	○ 마약범죄,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을 송부요청
2	2021.06.01.(1)	○ 사기범죄 양형기준 송부요청
3	2021.06.16.(1)	○ 재판진행관련 불만을 호소하는 내용
4	2021.06.17.(1)	○ 교통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대부업법위반범죄, 강도범죄, 성범죄, 유수신행위법위반범죄,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 송부요청
5	2021.06.18.(1)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

6	2021.06.18.(1)	○ 권리행사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을 송부요청
7	2021.06.24.(1)	○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송부 및 법률해석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1. 05. 21.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마약범죄, 환경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을 별첨과 같이 보내 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1. 06. 01.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별첨과 같이 보내 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1. 06. 16.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1. 06. 17.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1. 06. 18.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1. 06. 18.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권리행사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을 별첨과 같이 보내 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1. 06. 24.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별첨과 같이 보내 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별지 1]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성 명	김관정
	직 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1997. 사법연수원 수료(제26기) ○ 1997.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199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 2001.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200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07.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원 직무대리) ○ 2009.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2009.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0. 8.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 ○ 2011. 9.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 2012. 7.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2013. 4.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 2014.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 2015.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장검사 ○ 2016. 1. 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2017. 8.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 2018. 7.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19. 8.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 2020. 1. 대검찰청 형사부장 ○ 2020. 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21. 6.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성 명	이 근 수
	직 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주 요 경 력

-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 1999. 공군법무관
- 2002.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 2004.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
- 2006.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2009.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 2011.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11.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1. 10.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2013.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13. 4.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 2014.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 2015. 2.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 2016.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장검사
- 2017. 8. 수원지방검찰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형사제1부) 부장검사
- 2018. 3. 수원지방검찰청 첨단산업보호 전문 수사단장
- 2018. 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파견
- 2020.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
- 2020. 9.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 2021. 6.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별지 2] 신입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최 재 아
	직 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양형정책관)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2005. 사법연수원 수료(제34기) ○ 200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07.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 ○ 2009.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1. 일본 장기국외훈련, 후쿠오카지방검찰청 연수 ○ 2013. 2. 서울북부지검 검사 ○ 2017. 2. 법무연수원 교수 ○ 2019. 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 8.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 ○ 2020. 9.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여성가족부 파견) ○ 2021. 7.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양형정책관) 		

	성 명	홍 진 영
	직 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 요 경 력		
○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8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7기)	
○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0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1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15년	해외연수(미국 하버드 대학)	
○ 2016년	국제형사재판소 파견법관	
○ 2017년	춘천지방법원 판사	
○ 2018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전공: 형법)	

	성 명	박 복 순
	직 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3. - 2006.11.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 2006.11.- 2021.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15. - 현재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 2019.12. - 2021.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2020. 2. -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기 가족다양성 분과위원 ○ 2021. 4. -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1. 5. 2021년 가정의 달 기념 국무총리 표창 		

	성 명	최 익 구
	직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주요경력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유한) 금성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간사,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 법무법인 유스트 변호사
- 2015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2016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국방부 군내 사망사고 유족 법률자문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스타트업 법률 멘토, 수도권방위사령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평가 담당관, 서울특별시 공공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세무변호사회 이사
- 2019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위원
- 2020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특별위원회 간사, 노무변호사회 이사

[별지 3] 법원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단위: 명

법원	선고연도										소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중앙	-	-	4	-	4	3	13	5	15	6	50	
서울동부	-	-	1	1	1	5	6	2	10	9	35	
서울남부	-	-	3	3	-	10	5	10	16	15	62	
서울북부	-	2	-	2	5	4	17	13	18	15	76	
서울서부	-	-	2	4	3	3	10	7	11	15	55	
의정부	의정부	-	-	3	-	8	6	16	8	11	10	62
	고양	-	-	2	-	3	2	2	5	10	14	38
	소계	-	-	5	-	11	8	18	13	21	24	100
인천	인천	3	1	3	8	3	6	12	15	19	24	94
	부천	-	2	2	1	4	12	8	6	5	8	48
	소계	3	3	5	9	7	18	20	21	24	32	142
수원	수원	3	1	1	1	6	10	16	26	12	13	89
	성남	1	1	-	2	-	6	9	6	5	11	41
	여주	-	1	3	-	5	1	10	-	2	2	24
	평택	-	1	1	-	-	5	2	6	3	4	22
	안산	1	-	5	6	6	18	9	10	4	9	68
	안양	-	-	-	1	4	2	5	4	12	5	33
	소계	5	4	10	10	21	42	51	52	38	44	277
춘천	춘천	-	1	1	-	-	4	1	1	-	2	10
	강릉	-	-	-	-	1	5	3	1	6	5	21
	원주	-	-	-	-	5	5	6	-	2	1	19
	속초	-	-	-	-	-	-	-	1	2	-	3
	영월	-	-	-	1	-	2	1	2	2	-	8
	소계	-	1	1	1	6	16	11	5	12	8	61
대전	대전	1	1	1	5	5	4	11	15	22	11	76
	홍성	-	-	-	-	1	1	3	2	3	5	15
	공주	-	-	-	-	-	-	-	2	-	2	4
	논산	1	-	-	-	-	6	-	3	-	3	13
	서산	-	-	-	1	-	2	1	1	5	5	15
	천안	-	2	2	1	5	4	6	6	11	7	44
	소계	2	3	3	7	11	17	21	29	41	33	167
청주	청주	2	1	1	2	3	6	1	8	8	4	36
	충주	-	-	-	1	-	4	1	-	-	2	8
	제천	-	-	-	1	2	-	1	1	3	2	10
	영동	-	-	-	-	-	2	-	1	-	-	3

단위: 명

법원		선고연도										소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계	2	1	1	4	5	12	3	10	11	8	57
대구	대구	-	1	-	3	2	7	25	10	6	4	58
	대구서부	-	-	1	2	-	3	4	3	11	2	26
	안동	-	-	-	-	2	6	-	2	1	1	12
	경주	-	-	-	-	1	-	-	2	2	1	6
	포항	-	-	-	-	3	2	2	-	3	4	14
	김천	1	2	-	-	-	3	11	3	5	1	26
	상주	-	-	-	1	1	-	1	1	1	-	5
	의성	-	-	-	-	1	-	-	3	1	-	5
	영덕	-	-	-	-	1	1	-	1	-	1	4
	소계	1	3	1	6	11	22	43	25	30	14	156
부산	부산	2	1	-	7	3	2	9	15	12	4	55
	부산동부	-	-	1	1	-	1	5	4	3	4	19
	부산서부	-	-	-	-	-	-	1	7	7	6	21
	소계	2	1	1	8	3	3	15	26	22	14	95
울산		2	2	-	2	8	14	8	13	6	11	66
창원	창원	1	1	-	2	3	9	4	7	3	4	34
	진주	1	-	2	-	2	3	-	3	6	2	19
	통영	2	-	-	-	3	5	4	3	2	5	24
	밀양	-	1	-	-	-	-	-	3	-	1	5
	거창	-	-	-	-	-	-	1	-	-	1	2
	마산	-	-	-	-	-	1	1	-	-	3	5
	소계	4	2	2	2	8	18	10	16	11	16	89
광주	광주	3	-	5	2	4	9	22	13	12	22	92
	목포	1	-	2	-	-	2	5	1	2	2	15
	장흥	-	-	-	-	-	-	3	-	2	2	7
	순천	1	-	1	-	3	1	2	3	6	7	24
	해남	-	-	-	2	-	3	2	2	-	-	9
	소계	5	-	8	4	7	15	34	19	22	33	147
전주	전주	-	1	1	-	1	1	5	-	3	-	12
	군산	-	-	-	2	1	3	3	3	3	3	18
	정읍	-	1	-	2	2	1	2	4	1	1	14
	남원	-	-	-	-	-	-	2	-	1	1	4
	소계	-	2	1	4	4	5	12	7	8	5	48
제주		-	-	-	-	-	4	8	6	6	5	30
전체		26	24	48	68	115	219	305	279	322	307	1,713

[별지 4] 죄명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단위: 명

구분	세부죄명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2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2	1	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37	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	15	1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8	234	24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16	216	23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방조	-	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0	692	702
	소계	36	1,198	1,234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감금)	-	2	2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감금치상)	1	-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상해)	2	7	9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영아유기)	-	1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특수상해)	2	1	3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학대)	-	2	2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5	276	281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11	-	11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59	-	59
	소계	80	289	369
형법	영아유기	-	73	73
	영아유기치사	16	-	16
	유기	-	7	7
	유기치사	7	1	8
	학대	-	1	1
	학대치사	4	-	4
	학대치상	-	1	1
	소계	27	83	110
전체	143	1,570	1,713	